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20일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19.) 상정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2.3.)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 12. 5.)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3. 제안설명의 요지

(최보운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정경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공범을 의미하는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제28조의2제2항).

그러나,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하였으나 아동학대범죄에 이르

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어 범죄자와 혼동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그 정보가 기한 없이 보존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특히 현행법(제28조의2제2항)상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리되는 대상자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공범을 의미하는 아동학대행위자나 범죄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도 관리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의 행위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고, 「아동복지법」 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규정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도 추가하여 규정하는 등 아동학대 사례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첫째, 현행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서는 지자체장이 아동을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예외인 것으로 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예외 대상으로 아동학대행위자 외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도 포함하고 있음.

이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와 관련하여, 동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 과도한 친권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아울러, 신고에 따른 조사 또는 수사 외에 경찰의 인지수사 등 다른 경로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게 될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 제22조제3항제3호에서는 지자체장의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한 업무에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면서, 아동학대 판단을 위하여 지자체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아동학대 판단과 관련하여 현행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아동보호팀 사례회의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전담위원회 신설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전담위원회 운영으로 현행보다 사례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와 함께, 현행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자체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특히 현재에도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 외, 현행법 제22조제3항에서 지자체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발견 및 보호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있음. 그럼에도 세부 업무를 정하고 있는 각 호에서는 지원과 관련된 업무가 추가되어 있지 않은데,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제22조제3항제3호)의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재판단 등에 따른 사례판단이 누락되지 않도록 문구를 재정리할 필요도 있겠음.

셋째, 개정안 제28조의2제2항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 외에 아동학대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서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되, 이 경우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하여 입력된 정보의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의 정보를 비롯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지만 학대로 판단하지 아니한 일반사례 정보의 보존 기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선우)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